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필레 의원)

의안 번호	16-96
----------	-------

발의년월일 : 2016. 10. 19.

발의자 : 이필레·백남환·이봉수
차재홍(4명)

1. 제정이유

마포구민의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자율방범대의 정의 및 명칭 규정(안 제1조 ~ 제3조)
- 나.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에 대해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다. 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신고 등 절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방범대연합회, 경비 지원 및 지도 감독(안 제8조 ~ 제10조)
- 마. 방범대원의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및 제12조)

3.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6. 10. 20. ~ 2016. 10. 24.(의견제출 없음)
- 다. 조례안 :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지역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들이 집결, 회의 및 순찰 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방범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로 하고, 연합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연합회”로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법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방법대원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임무) ① 자율방법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노약자·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자율방법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법대 방법일지에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범위) 방법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등) ① 자율방법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

식에 따라 자율방법대 설립·등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검토 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법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방법대의 대표자는 방법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마포구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율방범대연합회) ①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에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등록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등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는 합동순찰,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도·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 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⑤ 연합회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10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 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업내용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법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방법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법대 및 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조 장	방법대장

()방법대 방법일지

년 월

순찰일시 [날짜(요일), 시간]	순찰 인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동선, 범죄예방 활동내용 등)	비고
월 일 (요일) : ~ :				

각 동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구 분	근무조장 (휴대전화)	근 무 조 원	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

설 립 자	① 성 명	한 글	② 생년월일
		한 자	
	③ 주 소		
신 청 내 용	④ 명 칭		
	⑤ 목 적		
	⑥ 초 소 위 치		(연락처 :)
	⑦ 총 인 원		
	⑧ 시 설·장 비		
	⑨ 설 립 연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동 자율방범대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 등록증

설 립 자	① 성 명	한 글	② 생년월일
		한 자	
	③ 주 소		
신 청 내 용	④ 명 칭		
	⑤ 목 적		
	⑥ 사무실 위치	(연락처 :)	
	⑦ 총 인 원		
	⑧ 시 설·장 비		
	⑨ 설립연월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연합회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